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원증명수단 도입에 따라 신원확인
신분증 사본 보관 업무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분에 관한 증명서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신분증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신분증 사본 첨부
에 갈음하여 신분확인서를 공탁기록에 철하도록 함(안 제3호 라목)

3.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불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불임과 같음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항 2)” 및 “나항 2)”의 경우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하는 신분
분에 관한 증명서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
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확인서(「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
규」 별지 제20호 양식)를 당해 공탁기록에 철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반송된 공탁통지서 교부 절차 <신 설>	3. ----- 라. “가항 2)” 및 “나항 2)”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는 신분에 관한 증명서가 이동통 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 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확인 서(「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 한 예규」 별지 제20호 양식)를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77